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3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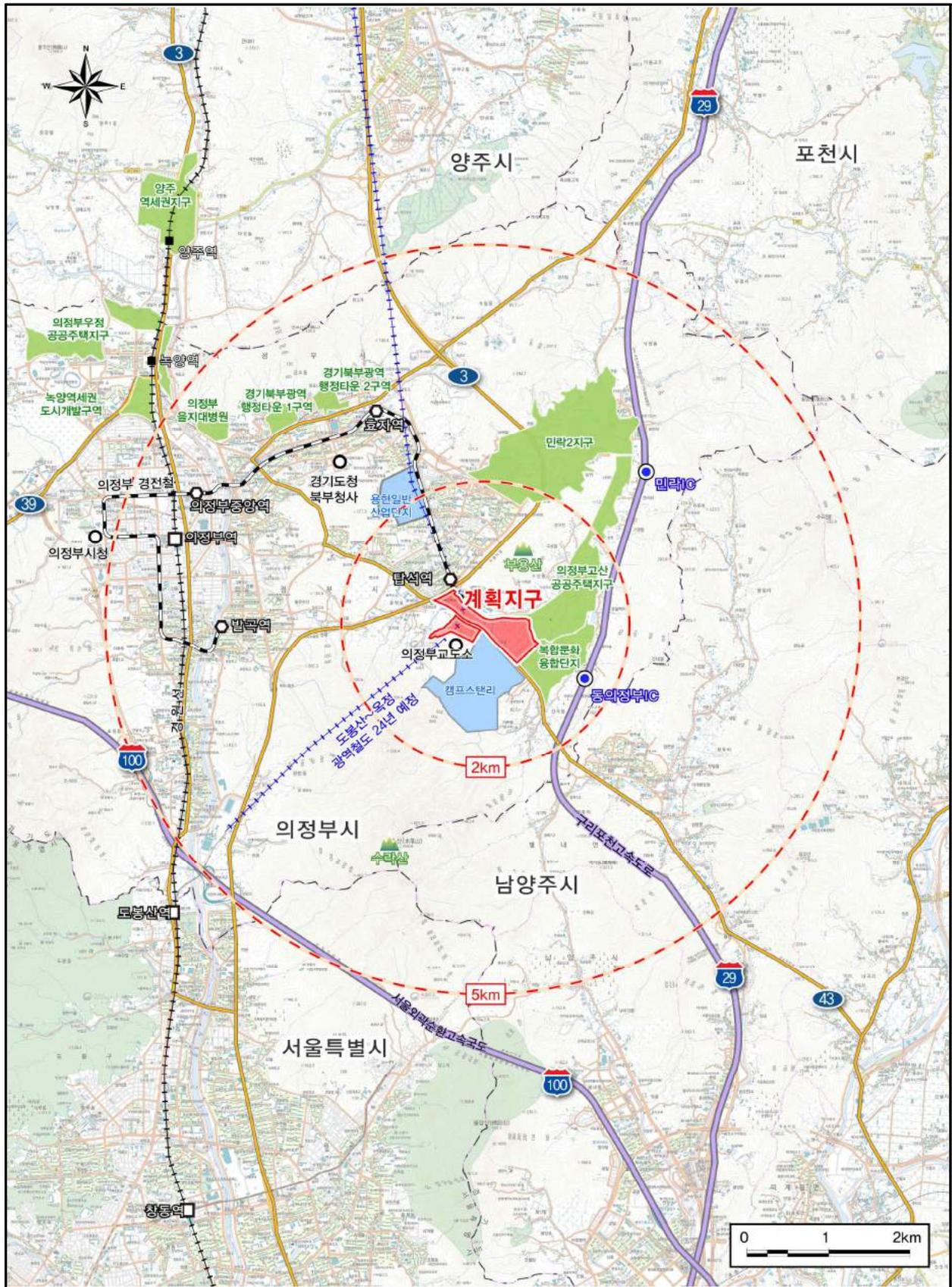
-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이 본격화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9.01.23.) 됨에 따라 노후·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2018년 03월에 국유지 개발범위를 건축이외 토지개발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지 11곳(693만㎡)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의정부 교정시설이 포함됨
- 따라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법원·검찰청 등 이전으로 경기북부 법조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함

## 1.2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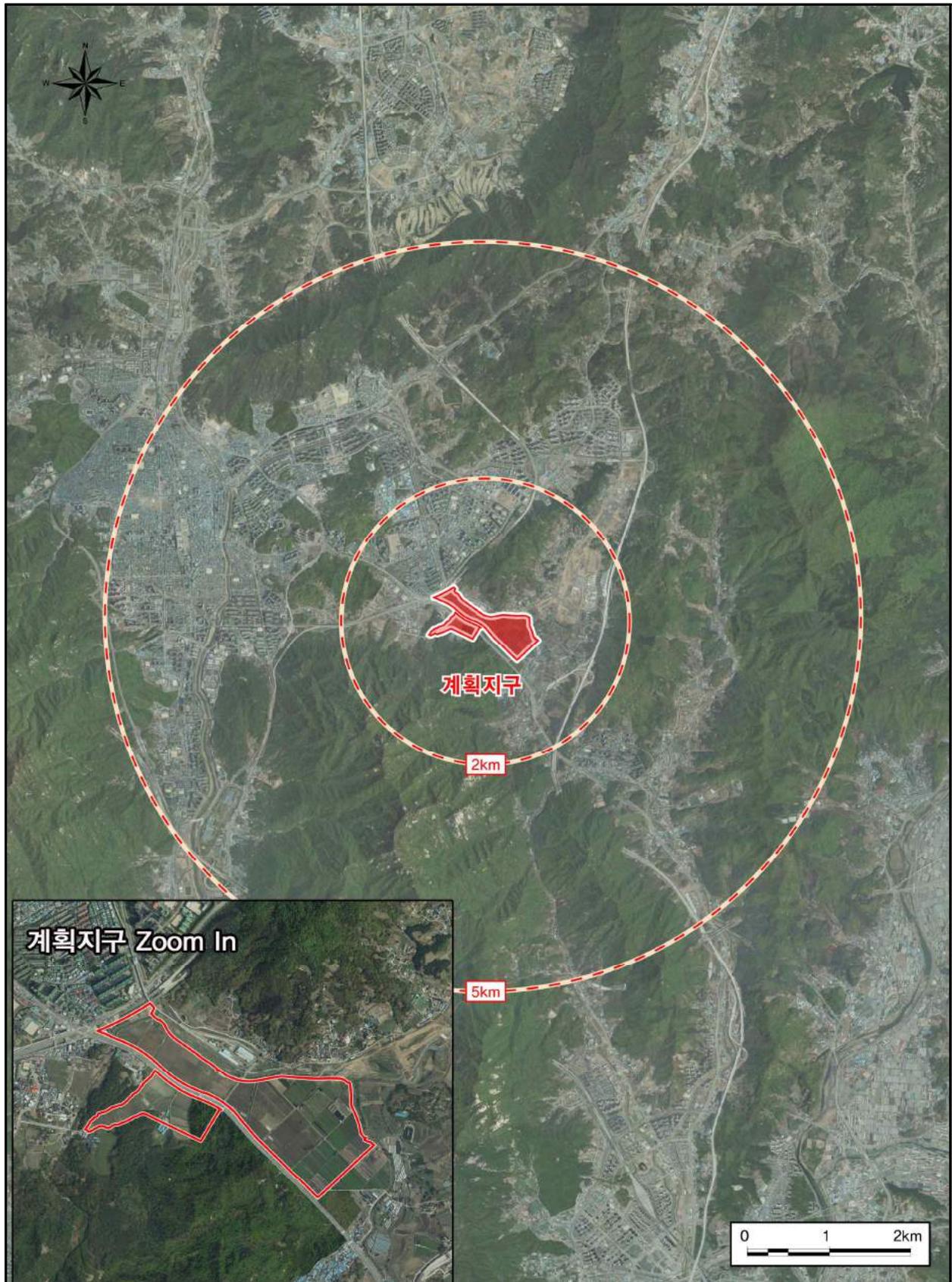
- 계 획 명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일원
- 면 적 : 523,101㎡(개발제한구역 100%)
- 계획인구 및 세대 : 10,357인(4,636세대)
-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 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1.3 계획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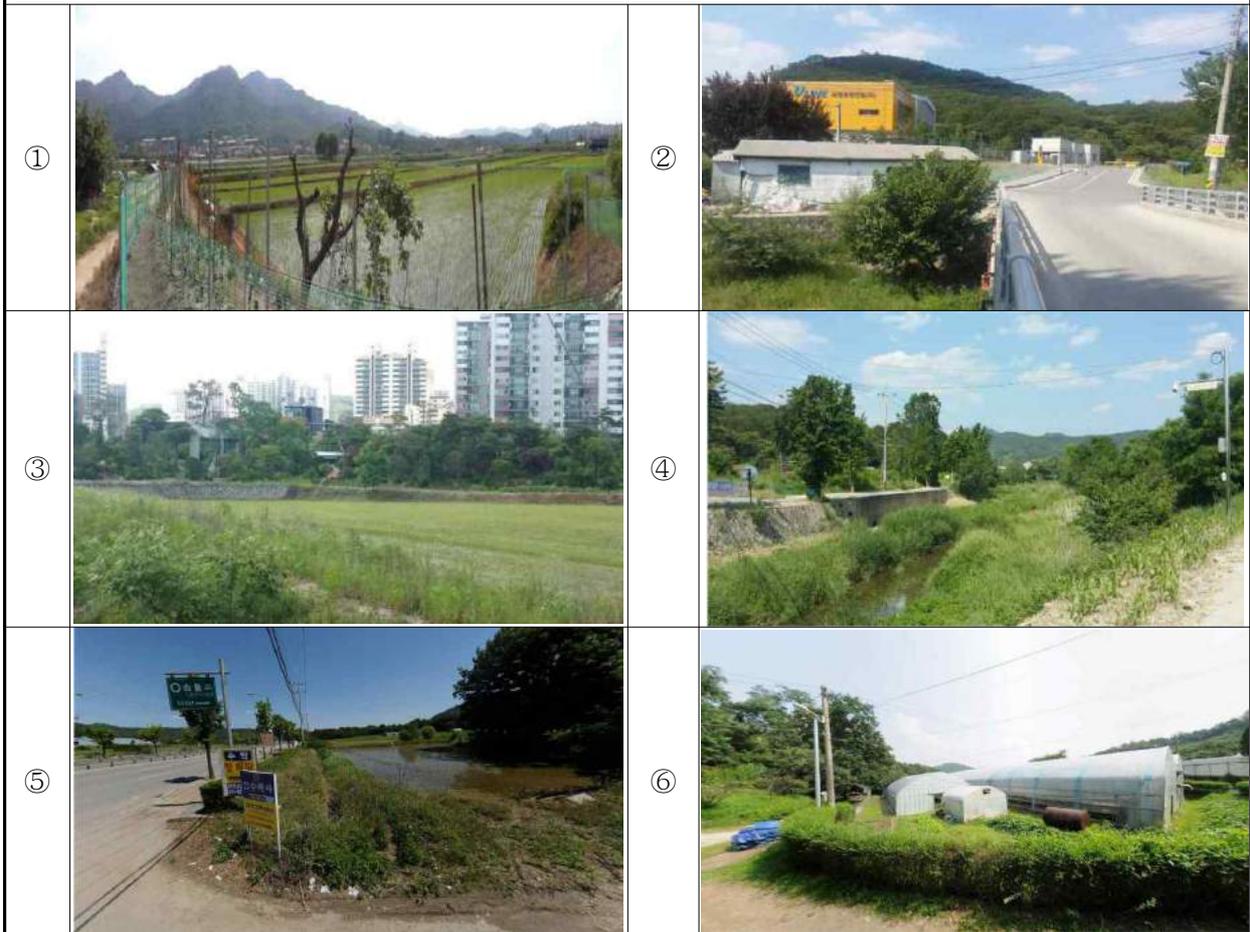
-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 부분 해소 도모
- 의정부 교정시설 유휴부지를 혁신성장 및 지역성장 시설을 배치하여 경제활력 보강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 계획지구 위치도(항공사진)



(그림 1-3) 계획지구 전경사진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 02. 05 ~ 02. 19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2.1 대상지역 설정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 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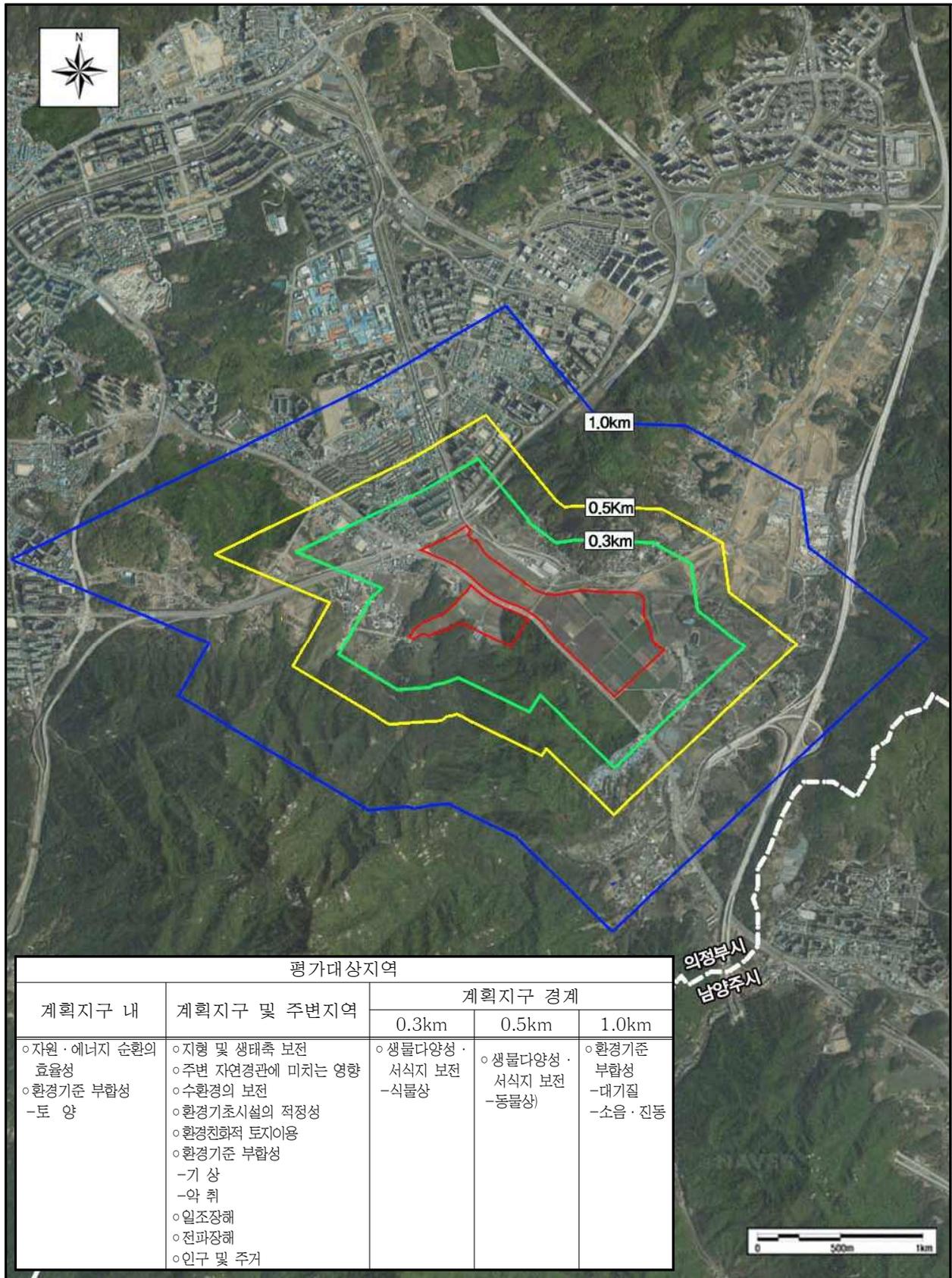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비 고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공사시 ○운영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흙깎기·쌓기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예상 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기 상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질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공사장비 이동·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 및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약 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변 약취유발시설(산업단지 등)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토 양	○ 계획지구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소 음 · 진 동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도로운행차량(송산로 및 신평화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및 철도(의정부 경전철)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일 조 장 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전 과 장 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전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오수 및 폐기물 등 처리에 대한 계획지구 주변의 환경기초 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지역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 원· 에 너 지 순 환 의 효 율 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 등에 의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폐기물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계획지구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 운영시 연료 사용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사 회 ·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 운영시
		인구 및 주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운영시

- 주) 1. 생물다양성·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에 제시된 영향범위는 식물상 0.1km, 동물상 0.3km이나,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식물상 0.3km, 동물상 0.5km로 설정함
2. 대기질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대기질 0.2k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대기오염 발생원인 고속국도, 국도, 개발사업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k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소음·진동 0.3k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소음발생원인 고속국도, 국도, 개발사업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km로 설정하였음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2013. 1. 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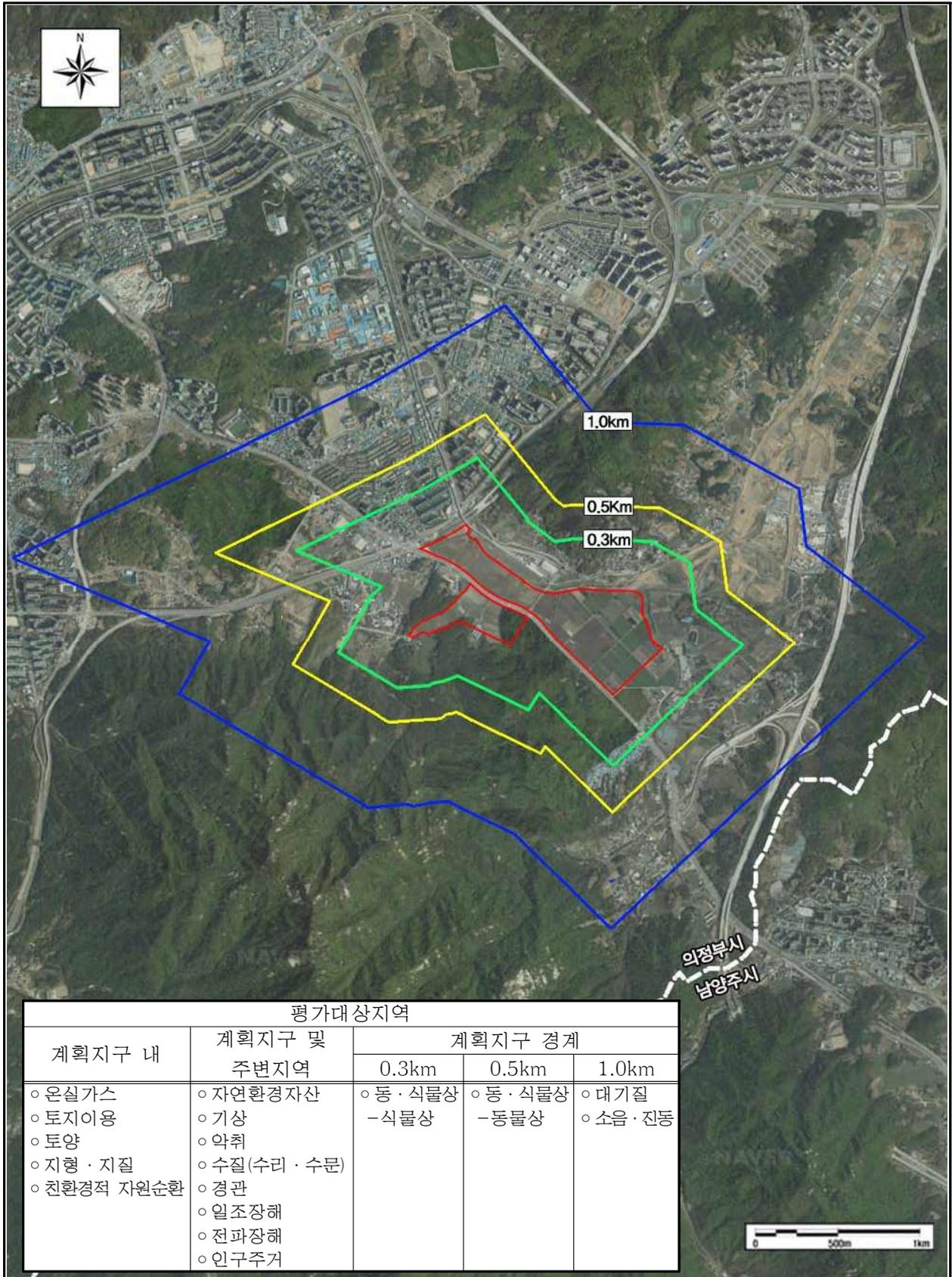
〈표 2-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기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질	○ 공사시 공사장비 이동·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 및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주변 악취유발시설(산업단지 등)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수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표 2-2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지형·지질	○ 흠쌓기 및 흠짜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도로운행차량(송산로 및 신평화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및 철도(의정부 경전철)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경 관	○ 주변 지역과의 경관영향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전파장해	○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전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에 제시된 영향범위는 식물상 0.1km, 동물상 0.3km이나,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식물상 0.3km, 동물상 0.5km로 설정함
2. 대기질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대기질 0.2k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대기오염 발생원인 고속국도, 국도, 개발사업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k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소음·진동 0.3k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소음발생 원인 고속국도, 국도, 개발사업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km로 설정하였음



(그림 2-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 2.2.2 대안의 설정

###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 1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계획의 경우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2-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2020.12.22.)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4〉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p>○대규모 유휴 국유지(의정부 교정시설) 개발로 지역 경제 활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북부 범조타운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p>	<p>○개별적 토지 활용시 효율성 저하</p>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 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계획지구 전역이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개발에 양호하며, 공원 및 녹지 등 조성계획으로 주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공사시 흙깎기·쌓기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 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으로 훼손 최소화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단지기능 확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	○계획지구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선정 (안)	○	-
	○계획시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의정부 교정시설) 활용으로 지역 경제활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바, 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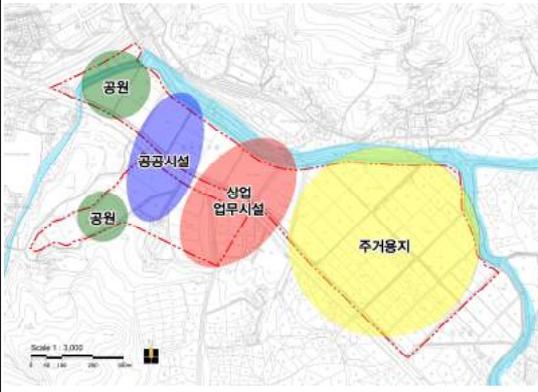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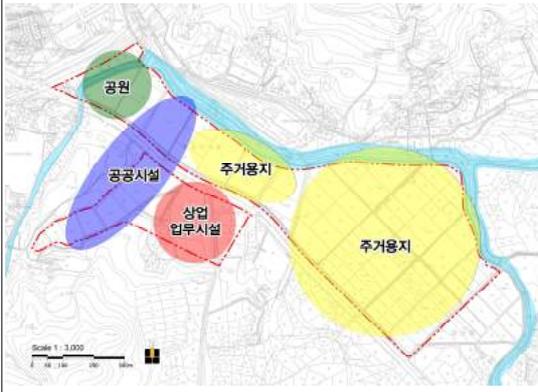
〈표 2-5〉 입지에 대한 대안 비교표

구 분	대안1	대안2
경 계 설정도		
		
면 적	523,101㎡	408,899㎡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부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기존시가지와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입지여건이 우수</li> <li>○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관리 중인 지역으로 대안2에 비하여 훼손은 증가하나 계획적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li> <li>○노후·유휴·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규모 개발로 지역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기여가능</li> <li>○기존 시설(의정부 교도소)과 연계한 시설(법원, 검찰, 관사 등)이 입지 가능토록 구역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부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기존시가지와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입지여건이 우수</li> <li>○대안1에 비하여 농경지 훼손은 감소하나 연결한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구계 제외시 공영 개발 부족</li> <li>○소규모 국유재산 개발로 지역경제활력 소극적 성장</li> <li>○기존 시설(의정부 교도소)과 연계성 부족</li> </ul>
선정 (안)	○	-
	○기존시가지와 주변 개발사업 및 노후·유휴·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규모 계획적 공영개발로 기존 시설과 연계성이 우수한 대안1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비교표(토지이용 구상)

구 분	대안1		대안2	
토지 이용 구상 (안)				
	면적(천 m <sup>2</sup> )	구성비(%)	면적(천 m <sup>2</sup> )	구성비(%)
총계	523	100.0	523	100.0
주택건설	227	43.4	230	44.0
상업업무시설	52	9.9	75	14.3
공원·녹지	107	20.5	107	20.5
기타공공	137	26.2	111	21.2
세대수	4,636세대		5,706세대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및 분양주택을 어울려 배치함으로 자연스러운 사회적 혼합(Social Mix)유도</li> <li>○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을 전체주택수의 약 61% 계획</li> <li>○주상복합용지는 지구 중심에 배치하여 업무 및 지원시설용지에 서비스 제공</li> <li>○기존 시설(의정부 교도소)과 인접하여 연계 될 수 있도록 관사 및 공공업무시설 배치</li> <li>○간선도로(송산로)에 의한 공간적 단절을 감안하여 핵심시설인 상업시설 용지를 송산로 하단중심에 배치하여 사업지구 통합화</li> <li>○업무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남북 분산 배치로 기능적 연계를 통한 물리적 공간의 분절 대응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및 분양주택을 어울려 배치함으로 자연스러운 사회적 혼합(Social Mix)유도</li> <li>○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을 전체주택수의 약 60% 계획</li> <li>○주상복합용지는 지구 상단에 배치하여 업무 및 지원시설용지에 서비스 제공</li> <li>○기존 시설(의정부 교도소)과 인접하여 연계 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 배치</li> <li>○간선도로(송산로)에 의한 공간적 단절을 감안하여 핵심시설인 상업시설 용지를 송산로 하단중심에 배치하여 사업지구 통합화</li> <li>○업무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편중 배치로 불편 초래 가능성 농후</li> </ul>	
선정 (안)	○		-	
	○주민이용 편의성, 기존 시설(의정부 교도소) 연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한 사안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지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안1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1)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7〉 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지구계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부지조성, 흙깎기·쌓기 등 계획수립시 지형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 방안 수립 필요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 상	○ 계획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변화 예상
		대기질	○ 토공사와 연료 사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악 취	○ 주변 악취유발시설(산업단지 등)로 인한 영향 예상
		토 양	○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소음·진동	○ 건설장비 가동,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소음환경기준 등과의 부합성
		일조장해	○ 계획수립에 따른 일조권 변화 예상
		전과장해	○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전과영향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수립 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 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수립 시 폐기물 발생 예상
		온실가스	○ 용수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 예상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인구·주거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2)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획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특성과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8〉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제5차 국토종합계획(21~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경기도 종합계획(21~40)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동·식물 현황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 생태계 영향과 그 범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토지이용구상 및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를 예측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지표수 6지점 - 지하수 2지점	○ 계획시행으로 토사유출 영향검토 ○ 계획시행으로 오수 등 영향검토 ○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여부 검토 ○ 점 및 비점오염원 부하량(수질오염총량)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 현황조사 7지점	○ 계획시행으로 연료사용에 따른 영향예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환경 기준과 비교·평가

<표 2-8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li>- 현황조사 3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조사를 통한 계획지구 주변 악취유발시설로 인한 영향검토</li> </ul>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li> <li>- 현황조사 3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li> </ul>
		소음 ·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li> <li>- 현황조사 5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계획시행 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li> </ul>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검토</li> </ul>
		전파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을 문헌자료를 토대로 검토</li> </ul>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연계처리 방안 검토</li> </ul>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 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성상별 처리계획 등 검토</li> </ul>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li> </ul>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환경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li> </ul>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li> </ul>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사업계획 및 지역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 14개항목, 현황조사 4개항목, 제외 4개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그 사유를 다음에 제시하였음

〈표 2-9〉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사유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 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자료)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대기환경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너지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악취	-	○	-	○계획지구 주변 악취유발시설 현황 및 악취 현황 파악
수환경	수질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투입인부 발생오수로 인한 주변수계 미치는 영향 검토 ○운영시 발생오수로 인한 주변수계 미치는 영향 검토
	수리·수문	○	-	-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토사유출 및 홍수위, 홍수량 검토를 통해 재해안전성검토
	해양환경	-	-	○	○계획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 미약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양	○	-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흙깎기·쌓기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교통소음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경관	○	-	-	○흙깎기·쌓기 및 구조물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약
	위락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약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에 따른 일조영향 예상
	전과장해	○	-	-	○계획지구 주변 지하철 운행에 따른 전과장해 영향 예상
사회· 경제환경	인구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파악
	주거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거 현황 파악
	산업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약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10>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 · 식물상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 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광역: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4회(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평가 ○ 육수생물상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해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영향 예측	○ 식물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 동물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의 분포 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 지역 등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주변 기상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기상연보 ○ 기상대 자료를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표 2-10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범위	
대기 환경 분야	대기질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원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7개 지점 × 4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AERMOD, CALINE-3 등의 대기확산모델 이용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악취	① 조사내용 -악취관리지역, 악취유발시설, 악취현황 등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분석·정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 × 4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시 공동주택 영향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 가스	① 조사내용 -공사시 투입장비 등 온실가스 발생원 -운영시 에너지 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분석·정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계획지구
수 환경 분야	수 질	① 조사내용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6개 지점 × 4회 -지하수 2개 지점 × 4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검토 ○ 수질오염총량 검토 ○ 운영시 급수 및 오·우수 처리 계획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표 2-10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범위
수 환경 분야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 영향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토지 환경 분야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 계획지구
토지 환경 분야	토 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 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 × 4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2회 · 환경영향평가시 2회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비탈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흙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비탈 면 발생, 사면안정성 등	○ 계획지구
생활 환경 분야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 계획지구

〈표 2-10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 분야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 : 5개 지점 × 4회 -진동 : 5개 지점 × 4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예측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생활 환경 분야	경 관	① 조사내용 -경관심의대상 여부 파악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의 선정(근경·중경·원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점의 변화 ○ 주요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 환경 분야	일조 장해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 환경 분야	전과 장해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주변 전과장해 유발시설물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기존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지구 내 전과장해 영향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 · 주거	① 조사내용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 가. 현지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 동·식물상 조사는 계획지구 및 인접수계를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
- 이후 환경영향평가시 현장조사계획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계획임

〈표 2-11〉 환경질 현황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 PM-10, PM-2.5,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8개 항목)	7지점	2회	2회	1일 (24시간)
악취	○ 복합악취(희석배수)	3지점	2회	2회	-
지표수질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b, Cr <sup>6+</sup> , PCB, ABS, TOC, T-P(16개 항목)	6지점	2회	2회	-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Pb, Hg, As, Cr <sup>6+</sup> , NH <sub>3</sub> -N, NO <sub>3</sub> -N, Cd, Al, 페놀, 총경도, KMnO <sub>4</sub> 소비량,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25개 항목)	2지점	2회	2회	-
토양	○ Cd, Cu, Pb, As, Hg, Cr <sup>6+</sup> , Zn, Ni, 불소, CN, 유기인, PCB,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피렌(18개 항목)	3지점	2회	2회	-
소음·진동	○ 소음도, 진동도	5지점	2회	2회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법정보호종 서식·분포현황	-	2회	2회	-

〈표 2-12〉 조사지점별 위치 및 선정사유

구 분		조사지점 선정	비 고
대기질	A-1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1161번길 161	주거지역
	A-2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9번길 18	교육시설
	A-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83 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육시설
	A-4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41번길 28	주거지역
	A-5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87	주거지역
	A-6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로 81	주거지역
	A-7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5번길 10	주거지역
약취	O-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06	-
	O-2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52-47	-
	O-3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536	-
지표수질	W-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90-2	소하천
	W-2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56-14	지방하천
	W-3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52-113	소하천
	W-4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75-9	지방하천
	W-5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46-1	소하천
	W-6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91-1	소하천
지하수질	GW-1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70	-
	GW-2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21-41	-
토양	S-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01	계획지구
	S-2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52-18	계획지구
	S-3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599	계획지구
소음·진동	NV-1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1161번길 161	주거지역
	NV-2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6 현대APT	주거지역
	NV-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86 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육시설
	NV-4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87	주거지역
	NV-5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5번길 10	주거지역

주) 1.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식물상 0.3km, 동물상 0.5km)  
 2.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지 현황조사 지점도

#### 나. 문헌자료 및 기존자료 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외에 추가로 주변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사업의 해당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자료를 인용할 계획임
- 문헌자료 조사 목록
  - 대기질 환경부 자동측정망 자료(계획지구 5.0km 이내 지점) 등 대기일반항목 조사항목
- 기존자료 조사 목록
  - 대기질, 지표수질, 소음·진동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서(공사시 3차년도 조사결과), 2019.7, 한국토지주택공사
  - 약취 :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가서(초안), 2019.03, 의정부시

## 2.2.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1)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 2)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및 계획수립 기관(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관련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초안 공람시 평가서와 요약서를 함께 비치하고, 주민설명회 시 현수막(플랜카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나. 환경영향평가

#### 1)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서에는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는 생략할 예정임

#### 2)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본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 할 것임
- 해당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 평가서(초안)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①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